

●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6-283호

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,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년 4월 23일

중소벤처기업부장관

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1. 제안이유

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이 개정('25.12.30. 공포, '26.7.1. 시행)됨에 따라 법률에서 대통령령에 정하도록 위임한 1인 소상공인 및 여성 소상공인 정의와 범죄피해우려 소상공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에서 규정하고,

「지방자치법」 및 「전남광주통합특별법」이 시행('26.7.1.)될 예정임에 따라, 지방자치단체의 장 종류에 통합특별시장을 추가하는 등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가. 1인 소상공인 및 여성 소상공인 정의(제4조의16제1항 및 제2항 신설)

- 1) 1인 소상공인은 상시 근로자 없이 단독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으로서 개인사업자는 공동사업자가 아닌 기업, 법인사업자는 대표자가 1명인 법인으로 정의
- 2) 여성 소상공인은 여성이 소유하고 경영하는 소상공인으로서 「여성기업법」 제2조에서 정의하는 여성기업에 해당하도록 정의

나. 범죄피해우려 소상공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(제4조의16제3항 신설)

- 1) 중소벤처기업부는 법 제12의9에 따른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,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자체별 1인 소상공인, 여성 소상공인 현황 등 자료 요청 가능

다. 통합특별시 신설에 따른 조문 정비(제4조의4 개정)

- 1)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나열하고 있는 조문에 통합특별시장을 추가하는 등 조문 정비

3. 의견제출

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(<http://opinion.lawmaking.go.kr>)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,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(반대 시 이유 명시)

나. 성명(기관·단체의 경우 기관·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그 밖의 참고 사항 등

※ 제출의견 보내실 곳

- 일반우편 : 세종특별자치시 가림로 180, 세종파이낸스센터 3차 중소기업부 소상공인 정책과
- 전자우편 : cho641@korea.kr
- 팩스 : 044-204-7849

4. 그 밖의 사항

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(전화 (044) 204 - 7823, 팩스 044-204-7849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